

##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38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17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주용	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4.10.10.강제경매개시 결정		배당요구종기	2025. 1. 28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목록1 지상 분묘(4기)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1. 일괄매각 2. 목록1은 제시외 건물(비닐하우스 약50㎡)이 있으나 해체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.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. 3. 목록1,2는 공부상 "임야"이나 현황은 "전" 등. 4.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382

### [물건 1]

-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산53  
임야 2863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 2번 이정구 지분 2474010분의 180180 전부

-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산53-1  
임야 152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 2번 이정구 지분 2474010분의 180180 전부

감정평가액		264,868,38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2.24	264,868,380	26,486,900
2회	2026.04.07	185,407,866	18,540,800
3회	2026.05.12	129,785,506	12,978,600
4회	2026.07.07	90,849,854	9,085,000

- 일괄매각
- 목록1은 제시외 건물(비닐하우스 약50m<sup>2</sup>)이 있으나 해체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. 최저매각 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.
- 목록1,2는 공부상 "임야"이나 현황은 "전" 등.
-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